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최경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연구책임자 : 최경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yungho Choi

2018. 10. 31.

연 구 진

연구책임 최경호 부연구위원

심의위원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난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제정되었으며,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국가에 의해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만들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제라 할 수 있음
- ▶ 상기한 바와 같이 기업운영에 있어 여성에게만 있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금 다른 형태의 법이 필요하였음.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상황과 현재의 입법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의 검토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지원정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법제가 어떻게 구체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II. 주요 내용

- ▶ 여성경제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구조의 젠더 편향을 극복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동등성’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이 되어졌으며 전반적으로 실효적이며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법제라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를 위해 1999년 당시의 입법상황 검토에서 출발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현황 검토를 통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고려될 수 있으나, 입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함.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입법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 제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간략히 설명. 제2장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작업을 하였음. 또한 같은 장 제5절에서는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약부분을 간략히 검토하여, 제5장에서 제2절 입법적 개선사항부분 제안에 활용
- 제3장에서는 여성기업지원정책 및 지원현황을 검토. 여성기업지원은 구체적 법률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와 세부적 법률조항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안을 검토하여 제5장 제2절 입법개선사안 제안에 활용
- 제4장은 미국 여성기업관련 법제를 간략히 검토. 미국에서는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정책을 담고 있는 법제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여성기업소유법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사점을 검토
-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제1절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평가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였으며, 같은 장 제2절에서는 2, 3, 4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입법적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제안

- 입법적 개선사항으로는 ‘여성기업지원 관련 각종 평가에서 여성전문가의 비율 제고’,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여성기업 인식제고 조항 추가’ 등을 검토

- ▶ 여성의 경제활동에는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들이 있고 이들 중 다수는 여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 또한 이는 여성들에게 불리한 조건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결혼률 저하,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포기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와 연동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책과 연동이 될 수 있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부가적 가치를 위해 연동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상황과 현재의 입법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의 검토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지원정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법제가 어떻게 구체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지 연구 및 검토 결과물 도출

- ▶ 주제어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여성기업지원, 여성기업애로사항, 적극적평등실현조치

Abstract

I. Background and Objectives

- ▶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was enacted in 1999. It actively supports the activities of women's enterprises and women's entrepreneurship to promote practical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economic field and to promote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women's economic status.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is a law that aim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t is a law that contains the contents of support for making practical equality in business operation by the State.
- ▶ As mentioned above, a different form of law was needed to supplement the difficulties that women might have in business operations. In 1999, a review of how the legislative situation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Women's Enterprise Support Act was different from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and the review of how the current legal system should be refined or improved in order to promote the current government would be considered

II. Outline

- ▶ In this study, I will start by examining the legislative situation in 1999 for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It also suggests remedies for areas that are not supported by legislation, although they may be considered for women business support through a review of the state of support for women businesses. In addition,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it will diagnose the areas where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for efficient support of women's businesses, and suggest improvements for them.
 - Chapter 1 introduce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research, research method and scope of research briefly. In Chapter 2, I analyzed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In addition, Section 5 of the same chapter briefly reviews the weak points of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and applies them in Chapter 5, Section 2, for suggestions on legislative improvements.
 - Chapter 3 reviews the policy and support status of women's companies. Support for women's businesses is not based on specific legal provisions or detailed legal provisions, but is sometimes pursued with policies. In the case of important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support of women's businesses,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specifically, steadily and continuously. Review the above issues and use them in Chapter 5, Section 2, suggesting legislative improvements.

- Chapter 4 briefly reviews the legislation related to US women's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laws similar to ours in that there are legal systems that encompasses policies to realize active equality for women. I review briefly on women ownership laws and consider implications for us.
 - In Chapter 5 of the last chapter, Section 1 briefly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Support of Women Entrepreneurs and Section 2 briefly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based on review in other Chapters.
 - Legislative improvements include 'Increasing the percentage of female specialists in various evaluations related to the support of women's businesses', 'Provision of sanctions for women in camouflage', 'adding a woman's business awareness-raising clause'.
-
- ▶ There are various social constraints on women's economic activities such as childbirth and childcare. Many of them have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in solving women themselves.
 - ▶ In addition, this is not only unfavorable conditions for women, but it can be linked with various social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 low marriage rate and abandon economic activities of highly educated women.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would give positive effects for solving these other social problems.

III. Expected Impact

- To examine how the legislativ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in 1999 differs from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and to study how the present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shaped or improved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 **Key Words :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Women's Enterprise Support, Problems with Women's Business, Affirmative Action**

목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3
Abstract	7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2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 / 21

제1절 기초분석	23
1. 입법목적 및 입법배경	23
2. 제정당시 입법 주요 골자	25
3. 적극적평등실현조치 반영	26
제2절 입법평가 관점의 제시	31
1. 입법평가 방법론	31
2. ‘지원-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성(equality)’의 관점에서 접근	32
3. 시대적상황에 따른 합목적성 반영	33
4. 여성의 참여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34
제3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검토	35
1. 여성기업 차별 금지 인프라 확충 조항(제4조)	35
2.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조항(제5조)	39
3.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조항(제9조)	40
4. 여성기업 확인제도(제20조의2)	41
제4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약성 검토	45
1. 개 관	45
2. 입법의 구체화 및 실효성	45

3. 위장여성기업 제제 약함	46
4. 자금지원제도 실효성 저해 부분	46

제3장 여성기업지원정책 및 지원현황 / 49

제1절 여성기업지원정책	51
1. 여성기업지원정책 검토의 필요성	51
2. 현행 여성기업지원정책 기본방향	51
3. 여성 평가위원 확대 정책	53
제2절 여성기업지원현황	55
1. 여성기업 현황	55
2.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조성 대폭 확대	57
3. 여성 특화(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58
4.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58
5. 기술, 금융, 인력, 컨설팅 지원	59
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활성화	61

제4장 미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제 검토 / 63

제1절 미국법제 분석의 필요성	65
제2절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합법성 판단 기준	66
1.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시행	66
2. 미국 법원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법제의 합법성 판단 기준	67
제3절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검토	68
1. 여성기업소유법 소개	68
2. 여성기업소유법(H.R.5050) 주요내용	69
3. 여성기업소유법 시행에 따르는 지원 조직	71

목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4절 미국 법제 및 정책의 시사점	73
1. 입법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73
2. 입법에 따른 기구의 작용 비교를 통한 실효성 검토	73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방법의 구체화를 위한 모델 발굴	73
4. 젠더법제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이해	75

제5장 결론 / 77

제1절 입법평가 결과	79
제2절 입법적 개선사항 제안	82
1. 개 관	82
2. 여성기업지원 관련 각종 평가에서 여성전문가의 비율 제고	82
3.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84
4. 여성기업 인식제고 조항 추가	86
5.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 인센티브	92
6. 조세의 실질적 지원 방안	93
참고문헌	95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제정되었으며,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¹⁾으로 하는 법으로 국가에 의해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만들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제라 할 것이다.

여성기업의 89.7%가 소상공인 형태라는 통계가 있다.²⁾ 산업구조와 기술구조 형태의 변화로 인해 소자본·소점포 창업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트렌드와 맞물려 여성의 창업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³⁾ 취업에 있어서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변화와 다양한 직업참여 경험에 따라 여성 창업에 관한 욕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영역에 있어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은 평등한 노동권 보장과 성차별적 노동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권과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여성기업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기업활동 참여는 기업내 상위 관리직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2) 김보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사후적 입법평가 워크숍 자료집, 13면(2018. 7. 5).

3) 민경원, 여성기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171면, GRI 연구논총 16(1), 경기연구원, 2014.

사회적 맥락속에서 여성의 역할, 성별문제가 전체사회에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고려가 필요하다.⁴⁾ 이러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여성기업 활동 지원법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여전히 “일·가족 양립 부담,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에 적응 곤란,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 제한, 여성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금융업무 수행과정시 불리함”⁵⁾ 등의 이유로 기업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업운영에 있어 여성에게만 있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금 다른 형태의 법이 필요하였다.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상황과 현재의 입법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의 검토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지원정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법제가 어떻게 구체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성기업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여성기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및 그 현실적 한계 및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규제영역에서의 입법평가의 영향분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⁶⁾ 지원법분야에 있어 표준화

4) 여성기업은 여성인력 고용비용이 높기에 여성기업의 성장은 여성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김보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사후적 입법평가 워크숍 자료집, 15면(2018. 7. 5).

5) Id., p.19.

6) European Commission의 규제입법영향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는,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2017. 7.

된 입법평가 표준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영향평가라 함은 입법의 영향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함으로써, 법안을 다듬고, 입법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⁷⁾ 사후적(ex-post) 입법영향분석은 현행 법률이 입법목적에 달성했는지 여부,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함으로써 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입법(better legislation)”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비용·편익분석도 하나의 평가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남성과 여성기업인의 실질적인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제인 만큼 ‘합리적’관점에서 법이 필요한 이유를 평가해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⁸⁾

본 연구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를 위해 1999년 당시의 입법상황 검토에서 출발한다. 또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현황 검토를 통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고려될 수 있으나, 입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기업의 효율적 지원⁹⁾을 위해 입법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코자 한다.

일면으로는 여성기업의 발전은 한국의 경제의 양적성장을 위한 새로운 보고가 될 수 있다. 여성기업 육성 방향을 검토키 위해 여성기업지원법제가 있는 미국 등과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법제의 위치를 가늠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지원 관련 정책의 개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김준,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1면 이하, NARS 현안분석 vol. 24, 2018.

8) 입법의 합리성에 관한 구체적 연구로는 마르틴 피르(김경제 역), 입법평가를 위한 질적 기준 15면, 한국법제연구원, 2011.

9) 중소벤처기업부·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2018), 306면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에는 자금지원제도, 세제지원제도, 판로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정보화지원제도, 사업전환 및 재창업 지원, 수출지원 제도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수행은 ① 국내·외 문헌연구 및 국내외 주요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 활용한 자료수집, ② 국내·외 관련부처를 포함 연구원 내·외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대상 자료 수집 및 확보한 후 동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간략히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작업을 한다. 또한 같은 장 제5절에서는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약부분을 간략히 검토하여, 제5장에서 제2절 입법적 개선사항부분 제안에 활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여성기업지원정책 및 지원현황을 검토하였다. 여성기업지원은 구체적 법률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와 세부적 법률조항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안을 검토하여 제5장 제2절 입법개선사안 제안에 활용하였다.

제4장은 미국 여성기업관련 법제를 간략히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여성을 위한 적극적평등실현정책을 담고 있는 법제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여성기업소유법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다만, 동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제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후적 입법평가이므로 미국의 관련 대표법제인 여성기업소유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제1절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평가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였으며, 같은 장 제2절에서는 2, 3, 4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입법적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제안하였다.

제2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

제1절 기초분석

제2절 입법평가 관점의 제시

제3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검토

제4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약성 검토

제2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

제1절 기초분석

1. 입법목적 및 입법배경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¹⁰⁾

1990년대에 들어 외형적으로는 여성기업의 성장이 있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기업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여성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¹⁾

통계적으로 여성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실질적 여성기업의 위상은 다를 수 있다. 여성기업은 여전히 대기업, 남성기업 위주의 프레임에서 차별적 관행 및 차별적 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와 같은 여성기업의 사회·경제적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1990년대의 한국의 정책적 흐름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중소기업법」이 기능별로 통합되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1) 김한중 외, 여성기업법 개정에 관한 연구, 9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5.

또한 1995년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청의 분리·독립이 1996년 이루어졌다. 이어 1997년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제적 약자였던 중소기업 지원이 계속해서 있는 와중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그 필요성도 증가하면서 여성기업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¹²⁾ 동 법은 1999년 2월 6일 법률 제5818호로 제정되었다.

법률 제정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평우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1997. 11. 4.) 「여성경제인지원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1997. 11. 6.)이 각각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6회 정기국회 제7차위원회(1997. 11. 7.)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제8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1997. 11. 11.)에 회부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법안을 담고 있는 두 개의 법안을 단일화하여 제198회 정기국회 제12차위원회(1998. 12. 16)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2개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단일안을 대안으로서 제안하여 제199회 임시국회(1999. 1. 6.)에서 통과하였다.¹³⁾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독립된 법으로 미국과 같이 중소기업법 안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것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추진토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¹⁴⁾

12)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법학, 제11호, 205면 이하, 2011.

13) 산업자원위원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998. 12, 의안번호1743, 1면.

14) 양인숙·강민정,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7면, 2012.

2. 제정당시 입법 주요 골자

[제정]¹⁵⁾

◇ 제정이유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여야 함(법 제3조).
- 나.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 다.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함(법 제5조).
- 라.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둠(법 제6조).
- 마.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법 제7조).
- 바.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해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 사.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물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함(법 제9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함(법 제10조).
- 자.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하고 동 협회사업 지원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내지 제17조).
- 차.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창업지원등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교육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제정·개정 이유-『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993&chrClsCd=010102>

3. 적극적평등실현조치 반영

(1)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개념

정부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의 이익도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소수자의 이익과 더불어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개개인의 권리 또한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¹⁶⁾

“차별(discrimination)은 소속된 집단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사람들이 인식하는 차별의 패턴은 크게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성적체성, 결혼여부 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다.¹⁷⁾ 이는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성적체성, 결혼여부 등의 이유로 하여, 불평등하고 부당한 처우 및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성별에 기한 차별 존재 이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유교문화의 잔재로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성별에 대한 차별이 존재 해 왔으며, 보수, 승진 등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¹⁹⁾ 이러한 성차별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며, 미국을 포함하는 외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문제점이다. 고위직 승진과정에서 여성에게 있을 수 있는 차별은 유리천장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²⁰⁾

적극적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는 사회로부터 차별받아온 일정한 집단을 상대로 차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해주고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로 대학입학, 기회 균등 제공 등 사회적으로 평등해질 수 있는 기회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정책을 의미한

16) 김정인,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9권 제1호, 106면 이하, 2013.

17) “Discrimination is defined as differential treatment of people depending on their group affiliation”(Fershtman, Chaim, Uri Gneezy, and Frank Verboven. “Discrimination and Nepotism: The Efficiency of the Anonymity Rul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34, no. 2, p.371, 2005.

18) Id.

19) Mohamad Alkady & Leslie Tower, Unequal Pay: The Role of Gend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888, Vol 66, Issue 6, 2006

20) Id.

다.2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잠정적 조치로서 목적달성 후 종료가능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또는 그 결과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평등실현조치를 담고 있는 법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차별 등 반론에 부딪힐 수 있고 적극적평등실현조치를 담고 있는 법제가 존치한다는 것은 일면 그 사회의 불평등 또는 과거 불평등에 따른 치유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법률의 목적을 재검토하여 법이 제정될 당시와 현재의 입법목적을 재평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존치 근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미국 등) 및 관련 판례는 차별에 대한 시정조치를 담고 있는 법·정책을 일괄적으로 지속하기 보다는 현 차별 및 그 시정 상황 분석을 통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적극적평등실현조치를 담고 있는 법·정책의 필요성이 적은 사회가 보다 완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2) 역차별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필요성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함에 따라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차별금지 원칙은 입법 및 법집행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여부에 해

2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에 관한 자세한 연구로는, 문미경 외,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 13면 이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당여부를 입법평가에서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²²⁾

2) 판례의 동향(A)²³⁾

1) 사건

2017헌마11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²⁴⁾

2) 결정일: 2017. 10.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청구인: 김○중

4) 사건개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및 [별표7]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이 여성기업에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아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 10. 1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어떤 계기 또는 사건으로 인하여 여성기업에 비하여 어떠한 내용의 차별을 받았는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보정기간 말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2)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 논의는 장민선,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에 관한 고찰-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3(1), 76면 이하, 2011.

23) 2017헌마11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동 판례에 관하여 각하결정 및 사안에 관한 소개는 본문에서 소개한 내용 정도로 동 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강일원, 이진성, 이선애)

3) 판례의 동향(B)²⁵⁾

1) 사건

2018헌마6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²⁶⁾

2) 결정일: 2018. 2.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청구인: 주식회사 ○○ 전문건설 대표자 김○수

4)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건설회사이다. 청구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인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및 [별표7]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 결과 여성기업이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최종낙찰자가 됨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아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 1. 2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입찰공고 제2015-9호(용역명: 주차관리 위탁용역, 용역기간: 2015. 5. 1.~2016. 4. 30.)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2015. 4. 22. 이루어진 개찰 결과 청구인이 아닌 다른 기업이 최저가입찰자로서 그 즈음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2015. 4. 22. 즈음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그 무렵 알았다고 볼 것이

24)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2017헌마11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각하 결정(2017. 10. 31).

25) 2018헌마6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동 판례에 관하여 각하결정 및 사안에 관한 소개는 본문에서 소개한 내용 정도로 동 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

26)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2018헌마6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각하 결정(2018. 2. 13).

어서, 그로부터 90일 및 1년이 모두 훨씬 지난 2018. 1. 2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6)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강일원, 김이수, 이선애)

4) 판례의 시사점

위의 두 사안과 같이 여성기업에 대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를 담고 있는 지원법제는 역차별 반론(예컨대, 2017헌마11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각하 결정)이 항상 따를 수 있는 법제이고 비록 위의 사안은 각하결정이 있었으나 당사자 적격을 갖춘 경우 현재는 본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동 법의 적용에 따른 시정 또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평가를 통해 동 법의 장기적 필요성 및 방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다음 절에서 검토하는 여성기업지원법제에 대한 합목적성 관점에서의 평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역차별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보고서 제4장(미국 여성기업 관련 법제 검토) 또한 역차별 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입법평가 관점의 제시

1. 입법평가 방법론

입법영향평가라 함은 입법의 영향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함으로써, 법안을 다듬고, 입법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²⁷⁾ 사후적(ex-post) 입법영향분석은 현행 법률이 입법목적 달성을 달성했는지 여부,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함으로써 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입법(better legislation)”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평가는 과학적 논증을 함께 해야 하며 입법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영향이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입법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예측·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evidence based) 예측·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에서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답이 입법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점에 대한 인식, 달성사항,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 경제, 사회, 환경적 파급효과와 영향을 받는 사람, 효율성·일관성 등의 관점에서 대안과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²⁸⁾

27) 김준,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1면, NARS 현안분석, vol. 24. 2018.

28) EC의 Better Regulation Guideline은 규제분야의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제3장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에서는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입법영향평가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p.17, 2017. 7.

The questions an impact assessment should answer	
1	What is the problem and why is it a problem?
2	Why should the EU act?
3	What should be achieved?
4	What are the various options to achieve the objectives?
5	What are thei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and who will be affected?
6	How do the different options compar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coherence)?
7	How will monitoring and subsequent retrospective evaluation be organised?

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법명과 목적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동 법을 “지원-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성(equality)’의 관점에서 접근”, “시대적 상황에 따른 합목적성”, “여성의 참여는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평가하고자 한다. 다만 동법의 모든 조항을 위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분시켜 평가하기보다는 위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접목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지원-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성(equality)’의 관점에서 접근

미국의 경우, 상무부 내 전담국을 설치하여 여성창업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정책의 관점을 ‘지원-시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제약 환경’으로부터 초래된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동등성(equality)’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²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등성’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지원정책’에서 무엇을 더하고 뺄 것인가의 논의보다는(실제 이러한 작업은 기본계획에 근거한 정책수립단계에서 논의될 것이다),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을 ‘지원’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9) 이영달,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 자료집, 49면, 2018. 5. 16.

즉, 여성경제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구조의 젠더 편향을 극복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동등성’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은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는 환경이 차별적임을 밝히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기회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³⁰⁾ 여성경제인이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등성’의 관점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은 비단 그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급자, 유통업자, 제조업자 등 그 기업과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경제인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차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제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논의를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시대적상황에 따른 합목적성 반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도입 배경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는 여성기업 육성의 중요성, 육성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입법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전체적 관점에서 필요한 시대적 상황과 함께 할 수 있는 고민을 담은 정책으로 특정 성별만을 위한 정책으로 제한해서 보기보다는 관점의 확장이 필요하다.³¹⁾ 여성기업 육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검토될 수 있으며, 인구 절반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서 양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이다.³²⁾ 한국 사회에서 결혼·출산·육아 등 선진국과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고 이러한 제약

30) 소은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입법평가 토론문, 현대사회의 입법이론과 현안 자료집, 111면, 2018.

31)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0, 31면, 2011.

32) 정현수, OECD 출산율 꼴찌는 한국...유일한 ‘초저출산국가’, 머니투데이, 2018. 8. 22.

은 여성 개인의 문제도 아니며 여성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국가, 사회, 기업, 가정 행위 주체들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중장년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기회를 새롭게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점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동등성의 관점에서의 차별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여성의 참여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일차적으로 경제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³³⁾

특히, 우리의 경우 내수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관계로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 증가가 중요한데, 현재의 구조에서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현상은 북미지역과 영국 및 서유럽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성 창업은 창업 영역의 취약한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창업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1) 30세 미만, 2) 일반 서비스, 3)여성 부문이 창업의 3대 취약 영역이라 할 수 있다. “30세 미만의 여성이 일반서비스” 부문에서 창업을 할 경우,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회-자원-경영팀”이라는 3대 필요충분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³⁴⁾

최근의 우리나라 창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여성들은 창업활동에 있어 1) 교육(기업활동에 대한 간접 경험) 2) 전문네트워크 활동(투자, 자금, 법률, 세무 등),

33) 이영달,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 자료집, 49면, 2018. 5. 16.

34) Id.

3) 육아/탁아/보육 기반 환경 등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따라주게 되면 창업에 참여하는 정도, 생존의 정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여성기업인의 사회적 취약성 극복에 일조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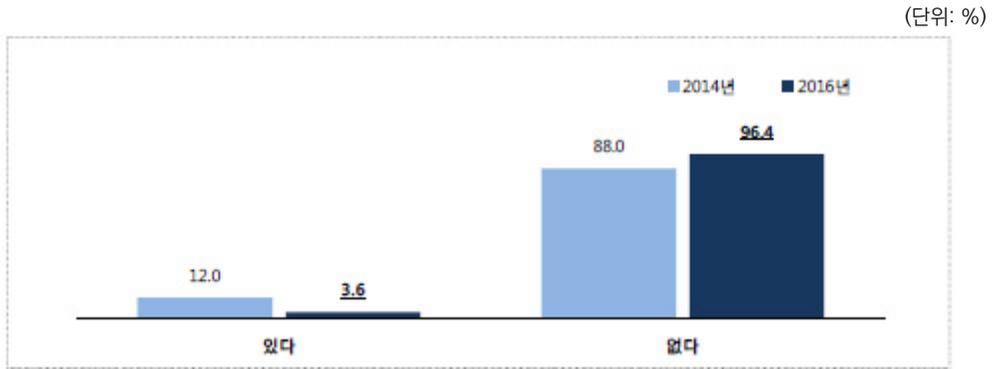
제3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검토

1. 여성기업 차별 금지 인프라 확충 조항(제4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보고서 2017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여성기업인으로서 느끼는 차별대우에 대한 구체적 경험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³⁵⁾

35) 중소벤처기업부·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82면, 2018. 2.

<그림1: 여성기업인으로서 겪는 차별대우에 대한 경험 유무>³⁶⁾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은 3.6%로 2014년(12.0%) 대비 8.4%p 감소함. 제조업(2.4%) 보다는 비제조업(3.9%)이 차별대우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4.2%), 비제조업 중 ‘정보통신업’(14.1%)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수도, 원료 재생업’(1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규모별로는 ‘100인 이상’(6.8%)에서 가장 여성기업인으로서 겪는 차별 대우가 많았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4.5%)에서 가장 많았다.³⁷⁾

36)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82면, 2018. 2.

37) Id.

<표1: 여성기업인으로서 겪는 차별 대우에 대한 경험 유무>³⁸⁾

(단위: 개사, %)

구분		사례수	차별대우 경험 있음	차별대우 경험 없음		
전체		71,046	3.6	96.4		
부 문	제조업	13,260	2.4	97.6		
	비제조업	57,786	3.9	96.1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1,825	4.2	95.8	
		섬유/의복/가방/신발	1,407	3.4	96.6	
		기타 제조	10,028	1.9	98.1	
	비 제 조 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70	10.2	89.8	
		건설업	11,922	4.3	95.7	
		도매 및 소매업	17,090	2.8	97.2	
		운수 및 창고업	2,593	0.2	99.8	
		숙박 및 음식점업	2,192	0.0	100.0	
		정보통신업	2,803	14.1	85.9	
		금융 및 보험업	901	1.5	98.5	
		부동산업	3,294	4.0	9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495	2.7	97.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90	6.7	93.3	
		교육 서비스업	2,141	5.0	95.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57	1.1	9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55	1.5	98.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83	1.2	98.8	
		종 사 자 규 모 별	5인 미만	33,978	4.1	95.9
			5~19인	29,118	3.0	97.0
20~49인	5,692		3.1	96.9		
50~99인	1,403		4.1	95.9		
100인 이상	855		6.8	93.2		
권 역 별	수도권	38,603	4.5	95.5		
	경남권	10,588	1.7	98.3		
	경북권	5,993	3.1	96.9		
	전라권	9,234	2.0	98.0		
	충청권	6,629	3.9	96.1		

38)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83면.

동법 동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차별의 시정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2018년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차별의 시정 방법으로는 두가지를 들 수 있다.³⁹⁾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여성기업’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 ②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한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여성기업’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에 ‘여성기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위반 시 감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 추진한다. 위장 여성기업 확인,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올해는 중기부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19년부터 타 부처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가부 등 협업이 필요하다. 지원사업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금지, 선정 평가 시 평가와 관련 없는 관련 질문(결혼여부 등) 금지 등도 포함된다. 그밖에 현행 차별적 규정 발굴·폐지키 위해, 정책자금, R&D 등에 일반기업 또는 남성CEO 기업 등에 유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개선한다.

둘째,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등 전반에 걸친 차별적 관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지방중기청, 여성경제인협회 본·지회 등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온라인 신고도 강화하며 대면 신고를 기피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메일 신고 등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한다. 또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 여성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적발되었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중기부 소속기관) 적용 시점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 발표 후 지침에 통보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39)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25, 26면, 2018. 5.

2.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조항(제5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중소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2월말까지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⁴⁰⁾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사항으로는 ①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②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③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의 목적은 종래의 남성위주 기업 및 남성경제인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정부는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능력있는 여성기업가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은 5년 단위가 일반적이나(예컨대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동법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기업 여건을 검토하여 보다 시의성 있고 실효성 있는 여성기업지원내용 발굴에 용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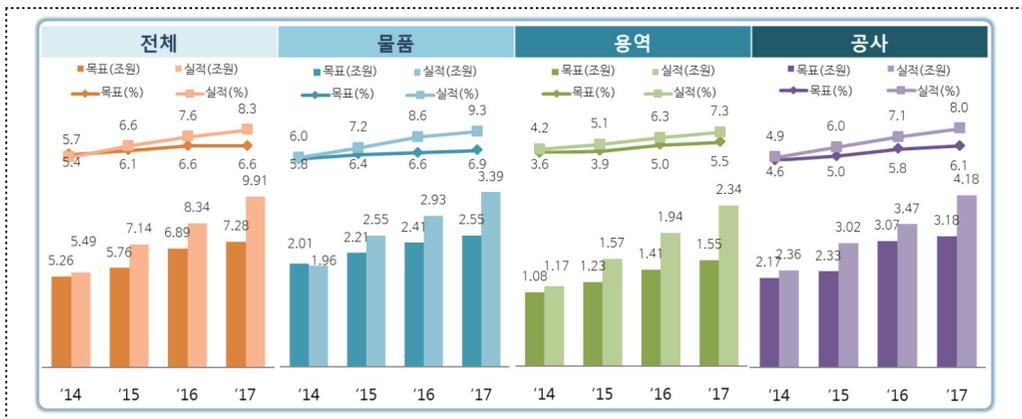
4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여성기업법 시행령 제3조.

41) 그 밖에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시로는 소비자기본법 제21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조항(제9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2: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⁴²⁾>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42) *Id.*, p.6.

<표3: 여성기업제품 구매 규모 및 비율⁴³⁾>

(단위: 조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	5.26	5.76	6.89	7.28	8.48
실적	4.48	5.49	7.14	8.34	9.91	-
(비율)	(4.0)	(4.9)	(6.0)	(7.1)	(8.0)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물품 및 용역은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에 해당한다. 동 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여 '14. 1월부터 의무화되었다. 동 제도를 통한 실적은 '14년 이후 구매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초과 달성되었다.⁴⁴⁾

공공구매를 지속 확대하여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9.9조원(전체 구매액의 8.0%)에 달하면서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의 통계는 2013년 제도 시행전 여성기업제품 구매율이 4%에서 2017년 8%로 제도의 시행 2014년 이후 구매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 우선제도는 여성기업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혜택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4. 여성기업 확인제도(제20조의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여성기업의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

43)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32면, 2018. 5.

44) Id.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⁴⁵⁾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 법에 의거 신청을 받은 후 신청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⁴⁶⁾ 이 경우 증명서류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함께 발급할 수 있다.⁴⁷⁾

종래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시행령에는 근거조항이 부재한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부정발급 받은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취약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2016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부정 신청 기업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조항이 추가되었다.⁴⁸⁾

부정발급 사례⁴⁹⁾

강원 지역에서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T社は 여성(아내)을 대표자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남성(남편)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았다가 사후관리에서 적발되어 확인서를 취소, 이후 지역 공기업 전자입찰에 취소된 기존 확인서를 허위 제출하였다가 형사 고발 조치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4조제1항은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

4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여성기업 정의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로는 한정미 외, 여성기업 정의에 대한 법률적 고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연구용역, 2017.

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4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제정·개정 이유-「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993&chrClsCd=010102>

49)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8면, 2018. 5.

(별지 제4호 서식 포함)를 처리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 제9조를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주명부, 주식 등 지분관계도로 규정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공동대표에 한함)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여성기업 확인요령 및 확인제도 운영지침은 여성 기업 확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관해 열거하고 있을 뿐, 확인신청자의 요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규정도 마련해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기업 특성상 여성기업임을 판단함에 있어 여성대표자의 대표성 여부와 실질적 경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만으로 확인하기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는 경우를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로 여성대표자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현재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시 1차로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자격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서류 확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한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평가위원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부적격 여성기업이 확인이 반려된 즉시 재신청하여 반복되는 현장실사를 통해 결국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법령상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전문 평가위원의 검증결과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이 반려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어 확인신청 제한 조항([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3호, 2016. 1. 27., 일부개정])이 신설되었다.⁵⁰⁾

5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제정·개정 이유-『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993&chrClsCd=010102>

또한 창업 기업의 경우 여성대표자의 경영 유무 판단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을 거친 후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거나 특히, 남성대표자에서 여성대표자로 대표자명의를 변경된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여성기업 확인의 특성상 여성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여성기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사 관리, 노무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등의 활동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신청을 받은 후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고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⁵¹⁾

또한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사후적 제재조치로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와 더불어 일정기간 동안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20조의 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2016. 1. 27.)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 1. 27.]

위와 같은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여성기업확인 조항은 그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5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항.

제4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약성 검토

1. 개 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앞서 주요 법률조항에 대한 검토에서도 밝혔듯이 전반적으로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 법률이다. 사후적(ex-post) 입법영향분석이 일반적으로 현행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함으로써 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입법(better legislation)”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을 위한 현행법의 취약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약성이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⁵²⁾ 아래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단히 언급을 하고 마지막장에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입법의 구체화 및 실효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있음에도 그 실효성이 약한 부분이 있다. 예컨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세제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포함 되어 있어서 선언적인 규정만으로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육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

52) 김준,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1면, NARS 현안분석 vol. 24. 2018.

3. 위장여성기업 제제 약함

제4절(“4. 여성기업확인제도”)에서 여성기업확인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정작업을 기술하였으나, 제제가 약한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장중소기업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조치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이행력이 제고되고 있는 반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여 이를 악용하여 위장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는 위장여성기업의 난립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후적 조치 마련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⁵³⁾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정한 수단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의 다른 확인제도 및 인증제도 등의 제재조치 규정을 참고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인 입법개선안은 제5장 제2절에서 제시한다.

4. 자금지원제도 실효성 저해 부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조항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⁵⁴⁾ 또한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53) 관련논의로는 김한중 외, 여성기업법 개정에 관한 연구, 72, 73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5

5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5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정책금융, R&D 등 정부 사업 전반에 걸쳐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R&D 평가위원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체화된 기술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우려가 있다.⁵⁶⁾ 따라서 기업현장을 잘 아는 여성위원에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여성기업 CEO 또는 임원, 산(학)연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입법개선안은 제5장 제2절에서 제시한다.

56) 여성기업 간담회(5.18, 중기부 장관 참석) 등에서 제기. R&D 사업에서 일반기업과 여성기업 R&D 한도금액이 다름,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여성 CEO 본인이 아닌 남편에 대한 질문을 계속함 등이 차별적 관행이 남아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장

여성기업지원정책 및

● 지원현황

제1절 여성기업지원정책

제2절 여성기업지원현황

제3장

여성기업지원정책 및 지원현황

제1절 여성기업지원정책

1. 여성기업지원정책 검토의 필요성

여성기업지원정책은 구체적 법률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와 세부적 법률조항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절에서는 여성기업지원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행 여성기업정책의 방향을 검토한다.

2. 현행 여성기업지원정책 기본방향

일자리 창출·상생 혁신 및 차별적 관행 철폐 등을 통해 여성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 목표를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⁵⁷⁾

57) 여성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최근 정책 동향은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18. 5.)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표4: 2018년 여성기업지원정책 기본 방향⁵⁸⁾>

AS-IS	TO-BE(개편방향)
일자리 창출 유인 부족	일자리 중심 개편
정부주도 성장 지원 · 형식적 상생협력	민간주도 방식으로 개편 · 상생 혁신 촉진
성과평가 · 분석 체계 미비	과학적 성과관리
여성기업 차별 빈번	차별적 관행 개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의 일자리 창출 유인 부족, 정부주도 성장 지원의 문제점과 형식적인 상생협력, 성과평가 및 분석 체계 미비, 여전히 남아 있는 여성기업 차별에 대한 사항을 2018년 주력 개선대상으로 주목하였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나은 기반 조성, 여성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강화, 기술혁신 및 금융지원 확대, 우수인력 확보 및 여성경제인 역량 강화, 공공구매 확대의 추진과제가 포함된다.

또한 여성기업 관리에 있어 과학적 성과관리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통계조사 및 정책연구 기능 보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여전히 차별적 관행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시정키 위한 여성기업 차별금지 인프라 확충을 그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58)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10면, 2018. 5.

<표5: 2018년 여성기업지원정책 추진전략 및 과제⁵⁹⁾>

추진전략		추진과제
일자리 중심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 지원	①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② 근로자 소득상승 등 소득주도 성장 지원
혁신 성장 · 상생 혁신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	① 여성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강화 ② 기술혁신 및 금융지원 확대 ③ 우수인력 확보 및 여성경제인 역량 강화 ④ 공공구매 확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공정경제 확립 및 상생협력 활성화	① 전담 신고센터 설치 등 불공정거래 근절 ② 이익·성과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활성화 ③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촉진
과학적 성과관리	과학적 성과관리 강화	①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② 통계조사 및 정책연구 기능 보강
차별적 관행 개선	차별 개선	① 여성기업 차별 금지 인프라 확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3. 여성 평가위원 확대 정책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30%까지 여성위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에는 남성위원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부족한 위원이 많았다.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의 30% 이상을 기업현장을 잘 아는 여성위원으로 충원토록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기업현장을 잘 아는 여성위원에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여성기업 CEO 또는 임원, 산(학)연 연구과제 참여 연구

59)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10면, 2018. 5.

원 등이 포함된다. 단순 기관보조, 평가인력 풀이 소수인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 평가인력 확보 정도 및 현재 평가인력 임기(임기제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중기부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2019년부터 타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여가부 등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6: 주요 사업 평가인력 풀 현황('18.4월)⁶⁰⁾>

사업명	평가인력 Pool	여성평가인력	비중
R&D	21,583명	1,116명	5.2%
창업지원 (융자 제외)	2,948명	472명	16.0%
수출지원	530명	54명	10.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동 정책은 2018년도 여성기업을 위한 중기부의 중요정책 중에 하나이다. 동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중요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입법화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해 보인다. 구체적인 입법화 방법에 대해서 본 보고서 마지막장 제2절 입법개선안 제안에서 검토한다.

60)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26면, 2018. 5.

제2절 여성기업지원현황

1. 여성기업 현황

<표7: 여성기업 규모별 현황>⁶¹⁾

구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계		
		소상공인					
전체 기업	기업수(개)	3,604,773	3,084,376	3,500,331	100,551	3,600,882	3,891
	비중(%)	100	85.56	97.10	2.79	99.89	0.11
여성 기업	기업수(개)	1,393,974	1,250,744	1,379,165	14,697	1,393,862	112
	비중(%)	100	89.7	98.9	1.1	99.99	0.01
남성 기업	기업수(개)	2,210,799	1,833,632	2,121,166	85,854	2,207,020	3,779
	비중(%)	100	82.94	95.95	3.88	99.83	0.17

<표8: 여성기업 업종별 현황>⁶²⁾

구분	계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전체기업	3,604	708(19.7)	1,005(27.9)	302(8.4)	150(4.2)	410(11.4)
여성기업	1,394	441(31.6)	413(29.6)	157(11.2)	85(6.1)	83(6.0)
비중	38.7	62.2	41.1	52.0	57.1	20.4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숫자는 1,393,974이며 이중 1,250,744가 소상공인으로 89.7%에 해당한다.⁶³⁾ 여성이 주로 진출해 있는 분야는 숙박 및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숙박·음식업, 도·소매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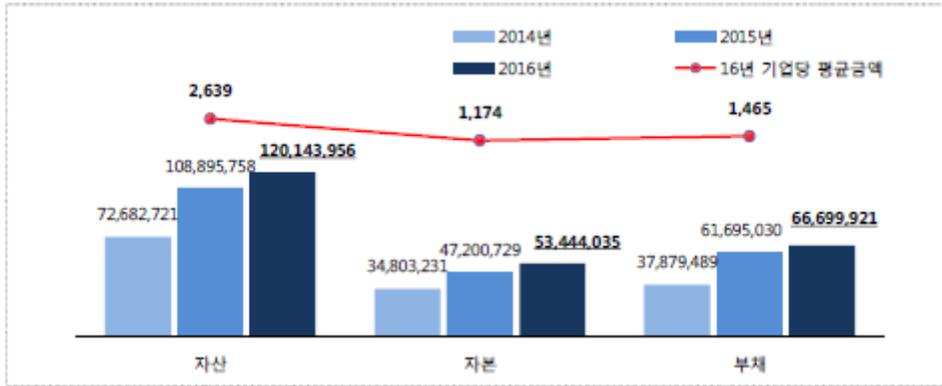
61) 김보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사후적 입법평가 워크숍 자료집, 13면(2018. 7. 5).

62) Id.

63) Id.

<그림3: 여성기업 재무상태>⁶⁴⁾

(단위: 백만원)



출처: 2017 여성기업실태조사

2016년 여성기업의 자산 총액은 120,143,956백만원이며, 기업체 당 평균 자산은 2,639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본 총액은 53,444,035백만원(기업체 당 평균 1,17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채총액은 66,699,921백만원(기업체 당 평균 1,465백만원)이었다.⁶⁵⁾ '16년 기업체 당 평균 자산은 제조업이 3,471백만원(자본평균 1,480백만원, 부채평균 1,991백만원), 비제조업이 2,412백만원(자본평균 1,091백만원, 부채평균 1,322백만원)으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약 1,059백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한편 2015년 여성기업의 자산 총액은 108,895,758백만원이며, 기업체 당 평균 자산은 2,639백만원으로 나타남. 자본 총액은 47,200,729백만원(기업체 당 평균 1,17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업체 당 평균 자산은 제조업이 3,113백만원(자본평균 1,267백만원, 부채 평균 1,845백만원), 비제조업이 2,196백만원(자본평균 974백만원, 부채평균 1,222백만원)으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약 917백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⁶⁷⁾

64)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79면, 2018

65) Id.

66) Id.

67) Id.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여성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여성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실질적 여성기업의 위상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통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성기업은 여전히 대기업, 남성기업 중시의 구조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기업의 경영상 어려운 분야로는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 기업에 대한 각종 법률적·사회적 규제,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 경영관련 정보획득, 원자재 조달 등 생산관리, 거래기업과의 분쟁, 기술개발, 기술,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 외상거래, 노사 관계 등을 들 수 있다.⁶⁸⁾ 이와 같은 영역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OECD 35개국 중 31개국으로 OECD국가 중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우리 경제의 양적성장을 위한 돌파구일 수 있다.⁶⁹⁾

2.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조성 대폭 확대

5년간 총 900억원('18년 100억원, '19~'22년 매년 2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여성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펀드 출자조건 우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출자조건 우대의 내용으로는 기준수익률 인하(일반 3%→0%), 콜옵션 한도 상향(일반 20%→상향 50%)이 포함된다.

또한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공동으로 여성기업 등(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창업 초기 기업,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및 전문가 상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68) 중소벤처기업부·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53면.

69) 김보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사후적 입법평가 워크숍 자료집, 12면(2018. 7. 5).

3. 여성 특화(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여성 청년(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미만)에게 창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오픈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우수 여성인재의 창업 촉진(기업당 1억원 한도, 100억원, 추경)한다.

또한 초기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창업선도대학 내에 초기 여성창업자(창업 3년 이내)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교육→발굴→사업화→성장에 이르는 창업 전과정을 지원(기업당 1억원 한도, 50억원)한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설도 주모할만하다. 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기술보호 관련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기업당 1백만원 한도, 2,000개사, 추경)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단여성의 창업지원도 중요하다. 새일센터(국 30개 새일센터에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창업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지원(여가부)), 지자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우수인재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을 지원한다.

4.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여성전용 BI 운영(전국 17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내에 설치, 총 225개실(*18.3월말 현재 169개사 입주)⁷⁰⁾, 입주기업 지원(우수 입주기업을 선발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 지원)을 통해 창업초기 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추진하고 있다.

여성창업자 발굴을 위해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벤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여성(예비)창업자 선정·지원을 하였다. 그 규모로는 2017년에는 여성창업경진대회 12개

70)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5면, 2018. 5.

팀(400팀 신청), 여성벤처 활성화 60개팀(101팀 신청)을 선정하였다.

또한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성장유망 여성기업을 발굴·투자하였으며 2017에는 150억원 조성('05년 이후 총 640억원 결성, 42개사에 364억원 투자)하였다.

5. 기술, 금융, 인력, 컨설팅 지원

전용 R&D 운영, 사업참여 우대 등을 통해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 여성기업 기술개발 및 정책 자금 공급 등 확대하고 있다.

<표9: 2016년 R&D, 금융 등 여성기업지원현황⁷¹⁾>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16년			
	전체		여성기업	
	기업수	금액	기업수 (비중)	금액 (비중)
R&D	6,460	8,823	518 (8.0)	587 (6.7)
정책자금	19,692	45,512	2,356 (12.0)	4,964 (10.9)
보증	464,329	111,849	112,761 (24.3)	24,785 (22.2)
컨설팅	995	138	155 (15.6)	19 (13.8)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71)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7면, 2018. 5.

<표10: 2017년 R&D.금융 등 여성기업지원현황72)>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17년			
	전체(A)		여성기업(B)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R&D	7,642	8,672	710 (9.3)	643 (7.4)
정책자금	22,836	46,661	2,693 (11.8)	5,133 (11.0)
보증	478,419	116,229	114,479 (23.9)	25,620 (22.0)
컨설팅	1,441	126	229 (15.9)	19 (15.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전용 R&D기금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초기 여성기업 등(여성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경단여성·여성과학기술인 창업팀, 경단여성 채용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전용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로는 최대 1억원(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총 10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여성기업 전용 보증프로그램 운영한다. 창업 및 성장기 여성기업을 위한 특별 보증프로그램 신설(5,000억원, 기보)하였으며, - 보증료 감면(0.2%p), 부분보증비율 확대(B0등급 90%, BBB등급 이상 95%) 등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기업 적극 발굴·지원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항목(KPI) 중 신규보증 지원실적 평가 시 신규 여성기업 보증실적 우대(기술평가등급 B0등급 이상인 신규 여성기업 발굴·지원 시 가중치 추가 반영(10%)) 제도가 포함된다.

72)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7면, 2018. 5.

여성기업 우대지원과 관련하여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여성 창업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 지원하고 있으며 그 한도를 확대하였다. 창업기업지원자금(운전자금) 연간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그 내용이다.

지방여성기업 우대지원의 내용으로는 지역 여성기업의 경영안정, 지속성장을 위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 시 가점부여, 금리인하 등 우대(지자체) 등이 포함된다. 가점부여(부산, 전북, 충북), 금리우대(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제주)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여성기업-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가능한 온라인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를 구축하여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케 하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 HW/SW 등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상담 및 정책정보 제공을 위해 여성경제인 DESK, 여성기업 정보포털 등을 통해 전문 컨설팅 및 여성기업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동조에 의거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⁷³⁾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⁷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내 일부 지역센터의 경우 임대방식으로 운영 중이어서 지역 창업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예컨대, 경남 센터의 경우 보증금·관리비 인상 요구에 따른 센터 유지비용 지속 증가(‘17년 123→’18년 133백만원, 타센터 평균대비 2.4배)로 시설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여성기업에 안정적인

7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7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지원이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등 창업 인프라 확대방안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확장의 내용으로는 임대방식으로 운영 중인 여성기업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장(건물매입 또는 신축)하여 창업보육시설 확충한다. '18년 경기센터 매입·확장(10→15실), 부산·인천·충남·경남 등 기타 임대센터도 기재부·지자체와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확장 추진을 계획중이다.

<표1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황 : 17개 센터(보육실 225개)⁷⁵⁾>

구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경기 북부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설립 연도	'07	'17	'08	'09	'10	'11	'11	'12	'08	'17	'09	'13	'10	'14	'09	'09	'12
운영 형태	매입	매입	임대	매입	임대	매입	매입	매입	임대	매입	매입	임대	매입	매입	매입	임대	매입
보육실 (개)	9	16	10	16	17	10	15	16	10	15	13	10	16	10	12	15	15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수 입주기업(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 투자유치나 각종 대회에서 성과가 있는 기업 등)을 선발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 지원을 한다.

75)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15면, 2018. 5.

제4장

미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제 검토

제1절 미국법제 분석의 필요성

제2절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합법성 판단 기준

제3절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검토

제4절 미국 법제 및 정책의 시사점

제4장

미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제 검토

제1절 미국법제 분석의 필요성

여성기업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법제 및 제도의 발전 정도가 상당하며 참고할 사안들을 제시하고 있다.⁷⁶⁾ 미국에서는 1972년 특별프로젝트로 여성 기업인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1977년부터 경제 센서스에 포함됨으로써 여성기업들의 활동이 경제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지속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⁷⁷⁾

헌법상 평등권에 입각한 차별금지 및 차별치유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이 입법으로 이어졌으며 여성기업소유법 등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제는 참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우리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처럼(설치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간 조직인 여성기업지원센터(WBC: Women's Business Center) 지원을 통하여 미국내에 위치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형태 또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소수인종 및 여성기업 등에 5% 할당도 우리와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이 시행했

76) 젠더와 평등에 관한 미국 연구 문헌으로는, Jody Feder, Sex Discrimination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velopments in the Law,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Naama Teschner, The Impact of Legislation on Gender Equality - Implement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The Knesset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2013; Olatunde C. A. Johnson, The Dignity of Equality Legislation, Harvard Journal of Law & Gender, vol36, 2013; Patricia A. Seith, Congressional Power to Effect Sex Equality, Harvard Journal of Law & Gender, vol36, 2013; Rosalie Berger Levinson, Gender-Based Affirmative Action and Reverse Gender Bias: Beyond Grats, Parents Involved, and Ricci, Harvard Journal of Law & Gender, vol 34, 2011.

77) 양인숙·강민정,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50, 51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던 여성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형태 또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⁷⁸⁾

또한 제2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젠더에 기초한 지원법제는 역차별 논리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기업소유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판례가 없어 보이나 여성에 혜택이 가는 법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법의 필요성 및 합목적성 검토는 역차별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보인다.

제2절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합법성 판단 기준

1.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시행

미국에서의 적극적평등실현조치는 소수 집단과 여성 기업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창업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성을 위한 차별 철폐 프로그램은 교육, 고용, 사업 소유권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여성 기업주를 위한 차별 철폐 프로그램으로는 정부 기관과 도급업자들이 여성 기업과 거래하도록 독려하는 적절한 법률 조치를 들 수 있다.⁷⁹⁾

또한 여성 기업주에게 재정, 관리,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역시 차별 철폐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차별 철폐 조치가 법으로 규정되면서 소수 집단과 여성들의 고용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차별 철폐 조치만으로는 차별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여성과 소수 집단이 더 많은 교육을 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여성기업소유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동안(1981년에서 1989년 사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차별 철폐 조치를 단호

78) Id.

79)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Women%27s_Business_Ownership_Act(최종방문:2018.10.15.)

하게 반대했는데, 당시 반대 의견이 많았던 탓에 정책의 효과가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있었다.

2. 미국 법원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법제의 합법성 판단 기준

여성기업에 관한 직접적 법률사항을 검토한 연방대법원 판례는 없어 보이나, 젠더에 관한 쟁점을 다룬 연방대법원 판례는 다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다.⁸⁰⁾

미국연방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우대처우로서 적극적평등실현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에 있어 다음 세가지 일반원칙을 이끌어 냈다.⁸¹⁾ “첫째,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여성에 대한 과거의 차별과 기회의 차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에 근거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역시 허용된다는 점이 그것이다.”⁸²⁾⁸³⁾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여성에 대한 기회의 차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는 허용된다는 점이다.

80) 젠더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로는 *Cleveland Bd. of Ed. v. LaFleur* (1974),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 (1986), *Johnson v. Transportation Agency* (1987), *Franklin v.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1992), *J.E.B. v. Alabama ex rel T.B.*, (1994), *United States v. Virginia* (1996), *Faragher v. City of Boca Raton* (1998), *Oncale v. Sundowner Offshore Serv., Inc.* (1998), *Davis v. Monroe County Board of Education* (1999), *Schlesinger v. Ballard* (1975), *Rostker v. Goldberg* (1981)

81) 김현철, 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현대적 경향, 50-53면,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35(3), 2015

82) *Id.*, 50.

83) 여성에 대한 과거에 차별에 대한 구제책으로의 혜택에 관해서는 1975년의 *Schlesinger v. Ballard*, 419 U.S. 498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해군의 승진시스템에 대하여 남성장교가 제기한 남녀차별에 기한 위헌주장을 배척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제까지 여성 전투병과장교들(line officers)은 남성 전투병과장교들에 비하여 승진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의회가 여성 전투병과장교들에게 승진을 위해 더 긴 복무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을 만든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1981년의 *Rostker v. Goldberg*(53 U.S. 57 (1981))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18세부터 26세까지의 남자만을 징병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병역법(Military Service Act)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Id.*

제3절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검토

1. 여성기업소유법 소개

미국 의회 위원회는 여성 기업이 직면한 네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⁸⁴⁾

1. “여성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의 필요성”
2. “신용대출 접근과 관련된 불평등”
3. “정부 조달 활동에서 여성 기업을 사실상 배제”
4. “여성 기업과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 불충분”

이 결과는 1988년 6월 28일 제출된 위원회 보고(Committee Report) 100-736에 기재되었다.⁸⁵⁾ 이러한 문제점의 발견은 여성 기업가들에게 유익한 공공 정책 및 프로그램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여성기업소유법은 여성 기업의 성공을 지원할 목적으로 존 라팔스(John LaFalce)가 도입한 법으로, 1988년 10월 25일에 제정되어 여성 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 공공/민간 부문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여성은 오랫동안 비즈니스 세계에서 배제되어왔지만 오늘날에는 여성 기업가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⁸⁶⁾

여성기업소유법은 여성에게 공평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여성기업소유법은 중소기업위원회가 여성 기업가가 직면한 문제와 관련해 시행한 6번의 공청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중소기업 위원회에서 발간한 “새로운 경제 현실: 여성 기업가의 부상”이라는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따르고 있다.⁸⁷⁾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여성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

84)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Women%27s_Business_Ownership_Act(최종방문:2018.10.15.).

85) Id.

86) Id.

87) Id.

평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과거에 형성된 사회적 장벽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유 및 지배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⁸⁸⁾

2. 여성기업소유법(H.R.5050) 주요내용

(1) 개관

존 라팔스 하원의원 (뉴욕, 민주당)이 고안한 여성기업소유법(H.R.5050)은 1988년 10월 25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제정되었다.⁸⁹⁾ H.R. 5050은 1988년 전국 여성 기업주 협회의 지원을 받아 통과되었다. H.R. 5050은 여성 기업가가 인정받고 적절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남성 기업주를 선호하는 은행의 불공정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여성이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여성기업소유법은 비교적 일찍 법제화된 여성기업법이라 할 수 있으며,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⁹⁰⁾ “제2장에서는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소기업을 위해 시범계획을 시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는 타당성을 평가하고 승인한 후 경영·자금·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여성 기업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국가여성기업가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활동을 매해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여성기업 통계자료와 조달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⁹¹⁾

88) Id.

89) 여성기업소유법(H.R.5050) 주요내용은 Lahle Wolfe의 글을 중심으로 정리. Lahle Wolfe, What is H.R. 5050 - The 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Updated April 20, 2018)

90) 양인숙·강민정,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36-40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91) 여성기업소유법의 장별 주요내용은, 양인숙·강민정,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36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2) H.R.5050입법으로 인한 주요 변화

H.R. 5050이 법제화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 기여를 하였는데. 미국 내 여성 기업가의 수와 성공에 직접적이고 눈에 띄는 영향을 초래한 주요 변화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⁹²⁾

- 여성 비즈니스 센터 프로그램 수립
- H.R.5050으로 여성이 사업 대출을 받을 때 남성 친인척의 서명을 요구했던 모든 주의 법이 폐지되었다.
- H.R.5050에는 전국 여성 비즈니스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다. 전국 여성 비즈니스 위원회는 당파를 초월한 위원회로, 대통령, 의회, 중소기업청에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여성 기구와 여성 기업가들로 구성된다.⁹³⁾

1989년 미국 내 여성 비즈니스 센터는 4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전국에 100곳이 넘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⁹⁴⁾ 1992년 26%에 불과했던 여성 기업주의 수는 2002년 57%로 증가했으며, 사업 대출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결과 많은 여성들의 창업 및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다. 남성의 공동 서명이 필요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⁹⁵⁾

92) 여성기업소유법(H.R.5050) 주요내용은 Lahle Wolfe의 글을 중심으로 정리. Lahle Wolfe, What is H.R. 5050 - The 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Updated April 20, 2018)

93) H.R.5050으로 여성기업이 힘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여성 기업과 관련된 유의미한 통계로 증명된다. 일부 입법적 변화가 사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H.R. 5050이 도입되고 20년 동안 여성기업소유법의 도움을 받은 여성들은 다른 모든 기업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속도로 창업과 기업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NAWBO는 이처럼 확고한 성공의 중심에 서 있었다. 모든 산업과 모든 규모의 기업에 걸쳐 있는 여성 기업주를 연결함으로써, NAWBO는 지역 수준에서, 미국의 더 넓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여성 기업가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94) Id.

95) Lahle Wolfe, What is H.R. 5050 - The 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Updated April 20, 2018)

3. 여성기업소유법 시행에 따르는 지원 조직

(1) 여성 비즈니스 센터

여성,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여성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해 창업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여성 비즈니스 센터는 여성들에게 교육 및 기술 지원, 기업 활동 지원을 제공한다.⁹⁶⁾

여성 비즈니스 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하였다.⁹⁷⁾ 여성은 교육, 재정,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같은 기타 지원 서비스에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기회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여성은 유사한 대출을 받고도 남성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물리적인 요소 외에도 여성은 사회 규범의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면 협상 상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성 비즈니스 센터는 사업 초기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⁹⁸⁾ 사업 초기의 일상적인 지원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여성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으며, 여성 기업가는 남성에 비해 사업을 조기에 접는 경향이 높다.

(2) 전국 여성 비즈니스 위원회

여성기업소유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전국 여성 비즈니스 위원회는 당파를 초월한 연방 자문위원회로, 대통령과 의회에 여성 중소기업 문제에 관련된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여성 비즈니스 위원회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

96) 여성 비즈니스 센터에 관해서는 다음을 중심으로 정리.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Women%27s_Business_Ownership_Act(최종방문:2018.10.15.)

97) Id.

98) Id.

할 수 있다.⁹⁹⁾ 1988년, 여성 소유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장벽을 파악해 매년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는 자문 위원회로 출범한 전국 여성 비즈니스 위원회는 1990년대 초까지 여성 기업주, 여성 정책입안자, 여성 은행 간부, 여성 기업조직 대표와 함께 여성 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논의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다가 1994년 중소기업재승인법(Small Business Reauthorization Act)을 토대로 전국 여성 비즈니스 위원회에 여성 기업주와 여성 기업조직 대표가 포함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98년, 중소기업재승인법이 확대되면서 전국 여성 비즈니스 위원회는 15명으로 확대 구성되었다.¹⁰⁰⁾

전국 여성 비즈니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5명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¹⁰¹⁾

- a.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장
- b. 여성 기업주 혹은 여성 기업 대표 8명 (4명은 여당 당원, 나머지 4명은 야당)
- c. 여성 비즈니스 센터 협회(Association of Women's Business Centers)
- d. ASTIA
- e. 전국 여성 기업주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Business Owners, NAWBO)
- f. 여성 비즈니스 기업 전국 위원회(Women's Business Enterprise National Council)
- g.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단체(Women Impacting Public Policy)
- h. 여성 기업가 단체(Women Presidents' Organizations)

99) 전국 여성 비즈니스 위원회에 관해서는 다음을 중심으로 정리.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Women%27s_Business_Ownership_Act(최종방문:2018.10.15.)

100) Id.

101) Id.

제4절 미국 법제 및 정책의 시사점

1. 입법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미국에 있어서 여성기업소유법이 제정이 필요했던 영향평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예컨대 문제상황에 대한 체크포인트(1. “여성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의 필요성”, 2. “신용대출 접근과 관련된 불평등”, 3. “정부 조달 활동에서 여성 기업을 사실상 배제”, 4. “여성 기업과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 불충분”) 등은 우리에게 유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로 활용이 가능하다.

2. 입법에 따른 기구의 작용 비교를 통한 실효성 검토

여성기업소유법에는 전국 여성 비즈니스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다. 전국 여성 비즈니스 위원회는 당파를 초월한 위원회로, 대통령, 의회, 중소기업청에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여성 기구와 여성 기업가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체적 역할 비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간략히 명시하고 있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제4조)의 역할 및 실효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방법의 구체화를 위한 모델 발굴

(1) 여성기업 전용 사전승인 대출제도

여성기업 전용 사전승인 대출제도는 미국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성기업인이 은행대출 신청 전 25만 달러 이하의 융자보증을 미국 중소기업청이 해주는 프로그램이다.¹⁰²⁾ 여성기업인의 담보 소유여부보다는 신용경력, 여성기업인의 인격,

102)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7면, 2011.

지불능력 등을 심사하여 담보력이 약할 수 있는 여성기업인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접근 프로그램이다.¹⁰³⁾

동 프로그램의 대상 자격은 “1인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 또는 경영 되는 기업으로 평균 매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이고 종업원의 수가 100인 미만인 기업이다.”¹⁰⁴⁾ “최대한도 25만 달러를 중소기업청이 90%까지 보증해주며, 부동산 및 장비 구입을 위한 경우는 25년, 운영자금을 위한 대출은 7년까지가 대출 기간이고, 대출이율, 상환기간, 부대정책, 보증비율은 7(a)대출보증프로그램의 규칙에 따른다.”¹⁰⁵⁾

동 제도는 담보력부족 및 신용부족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기업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기 힘든 여성기업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기업의 담보력이 아니라 여성기업의 안정적 재무현황, 지불능력, 사회적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함으로써 담보력이 약한 여성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여성기업 전용 소액대출제도 도입

여성기업 전용 소액대출제도는 여성기업의 특성에 부응하는 제도이다.¹⁰⁶⁾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법」 제7조(소액대출 프로그램 (MicroLoa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 소수민족 기업인 및 비즈니스 소유주, 저 소득자 등을 지원하며, 금융지원기회가 적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¹⁰⁷⁾ “이 프로그램의 시스템은 중소기업청이 중개인 및 비영리

103) Id.

104) Id.

105) Id. pp.107, 108.

106) Id. pp. 105-107.

107) Small Business Act §7(m) MICROLOAN PROGRAM (1)(A) PURPOSES. The purpose of the Microloan Program are :

(i) to assist women, low-income, veteran (within the meaning of such term under section 3(q)), and minority entrepreneurs and business owners, and other such individuals possessing the capability to operate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증개인 및 비영리단체가 다시 여성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¹⁰⁸⁾

4. 젠더법제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이해

여성기업지원법에 관한 구체적 입법적 도전 사례는 찾을 수 없었으나, 젠더법제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이해의 근거는 제공받을 수 있다. 여성에 대한 기회의 차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는 허용될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¹⁰⁹⁾ 이는 향후 한국에서 여성기업지원법제가 입법적 도전을 받을 시 입법의 합법성의 근거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은 있다.¹¹⁰⁾ 평등권 심사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합리성 심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헌법문언상 특별히 차별금지 요청, 평등의 근거를 도출 가능하거나, 차별대우로 인하여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경우 비례원칙 평등심사를 적용하고, 여기에 다시 헌법적으로 우대를 요청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비례원칙 평등심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체계화되어 있다.¹¹¹⁾ 반면에 미국의 경우, 차별대우의 경우, 성별·국적·인종 등 어떠한 대상에 대한 차별인가의 여부에 따라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¹¹²⁾ 따라서 미국의 성별에 기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심사기준을 직접적으로 원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오늘날 한국의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적용은 다양한 이유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광의의 범주에

successful business concerns : and

(ii) to assist small business concerns in those areas suffering from a lack of credit due to economic downturns.

108)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6면, 2011.

109) 김현철, 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현대적 경향, 50-53면,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35(3), 2015

110) 한국과 미국의 평등심사체계의 차이에 관해서는 이재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위헌심사, 87면 이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111) 한국과 미국의 평등심사체계의 차이에 관해서는 이재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위헌심사, 87면 이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112) Id.

서 허용되는 예시들을 검토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적용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¹¹³⁾

113) Id.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결론

제1절 입법평가 결과
제2절 입법적 개선사항 제안

제1절 입법평가 결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여성의 기업활동과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중요한 근거법이 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는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들이 있고 이들 중 다수는 여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여성들에게 불리한 조건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결혼률 저하,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포기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와 연동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책과 연동이 될 수 있다.¹¹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경제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가치 실현과 연동될 수 있는 것이다.

입법영향분석이란 입법의 영향(impact)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예측·분석·평가(assessment, analysis, evaluation)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법률이 주된 영향분석의 대상이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분석의 초점은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부작용 발생 여부가 주된 초점이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영향(재정, 경제, 중소기업, 규제, 성평등, 부패, 환경 등)도 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입법에 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협의(consultation)도 분석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다.

114)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0-33면, 20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를 위해 제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작업을 하였다. 또한 같은 장 제5절에서는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약부분을 간략히 검토하여, 제5장에서 제2절 입법적 개선사항부분 제안에 활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여성기업지원정책 및 지원현황을 검토하였다. 여성기업지원은 구체적 법률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와 세부적 법률조항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안을 검토하여 제5장 제2절 입법개선사안 제안에 활용하였다.

제4장은 미국 여성기업관련 법제를 간략히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여성을 위한 적극적평등실현정책을 담고 있는 법제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여성기업 소유법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다만, 동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제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후적 입법평가이므로 미국의 관련 법제를 간략히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제1절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평가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였으며, 같은 장 제2절에서는 2, 3, 4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입법적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제안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명과 목적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등성’의 관점에서

는 현재의 ‘지원정책’에서 무엇을 더하고 뺄 것인가의 논의보다는(실제 이러한 작업은 기본계획에 근거한 정책수립단계에서 논의될 것이다),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을 ‘지원’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여성경제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구조의 젠더 편향을 극복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동등성’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은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는 환경이 차별적임을 밝히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기회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이 되어졌으며 전반적으로 실효적이며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법제라 볼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함에 따라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차별금지 원칙은 입법 및 법집행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여부에 해당 여부를 입법평가에서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¹¹⁵⁾

제2장 제1절과 제2절 그리고 제4장 제1절에서 검토된 것처럼 여성기업지원법제가 역차별이라는 논리는 아직 약해 보인다. 동등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합목적성 관점에서 지원되어야 할 다양한 논거가 있어 보인다. 여성기업 육성 정책은 긍정적 효과는 여성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련 문제점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115)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 논의는 장민선,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에 관한 고찰-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3(1), 76면 이하, 2011.

제2절 입법적 개선사항 제안

1. 개 관

동 보고서는 제2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에서 입법평가의 관점제시를 하였으며 같은 장에서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여성기업에 관한 평가 관점을 가지고 제2장에서 지적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개선안을 동 장 제2절에서는 제시한다. 또한 제3장에서는 현행 여성기업지원정책 및 현황을 검토한바가 있다. 여성기업지원정책 중 구체적입법근거가 없는 사항 중 중요한 정책이라 검토되어져, 입법 근거를 구체화하여 장기적, 안정적 적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도 동장 동절에서 개선사항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에 대한 사업기회의 균등보장, 종합적인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위원회 및 각종 협회의 설치 및 운영, 자금·디자인개발·경영능력 등의 각종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¹⁶⁾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충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 규정의 구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화된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2. 여성기업지원 관련 각종 평가에서 여성전문가의 비율 제고

정책금융, R&D 등 정부 사업 전반에 걸쳐 여성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R&D 평가위원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체화된 기술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¹¹⁷⁾ 여성기업관련법에서 평가위원의 균형

116)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7, 88면, 2011.

117) 여성기업 간담회(5.18, 중기부 장관 참석) 등에서 제기. R&D 사업에서 일반기업과 여성기업 R&D 한도금

등을 통해 개선방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정책적 결정으로 충분한지 또는 법률적 규제사안인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을 신설하는 입법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조항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제1항). 또한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현 행	개정안
<p>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신설)</p>	<p>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정부는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남성과 여성 심사위원의 비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액이 다름,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여성 CEO 본인이 아닌 남편에 대한 질문을 계속함 등이 차별적 관행이 남아있다.

	현 행	개정안
입법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에는 남성위원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부족한 위원이 많았음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9면, 2018. 5.)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30%까지 여성위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관점이 입법을 통해 지속적 시행이 가능케 함 • 기업현장을 잘 아는 여성위원에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여성기업 CEO 또는 임원, 산(학)연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3.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동 보고서의 제2장 제4절(4. 여성기업 확인제도) 및 제5절(3. 위장여성기업 제재 약함)에서 여성기업확인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장중소기업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조치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이행력이 제고되고 있는 반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위장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는 위장여성기업의 난립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정한 수단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의 다른 확인제도 및 인증제도 등의 제재조치 규정을 참고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사입법례: 중소기업법
제28조(과태료) 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기타 다른 확인제도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확인제도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유사업법례2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p>
<p>제20조(별칙)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또한 장애인기업 확인의 경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0조에서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별칙규정을 두고 있다.

<p>유사업법례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p>
<p>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②항 - 생략</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p> <p>⑥ 제3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제5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p>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동법 제8조제3항에 의해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여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¹¹⁸⁾ 또한 입찰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자격 제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다.¹¹⁹⁾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입법개정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4(별칙)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법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사후적 제재조치 마련으로 위장 여성기업의 출현을 방지 • 공공구매제도 등의 수혜를 목적으로 진입한 위장여성기업 퇴출을 강화
-------	--

4. 여성기업 인식제고 조항 추가

(1)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여성기업실태조사(2017)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변화되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여성 기업인의 57.2%는 ‘변함’(조금 변화였음+많이 변화였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14년 대비, ‘변함’은 15.1%p 증가하였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¹²⁰⁾ 반면,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2014년 대비 11.3%p 감소하였다. ‘변함’(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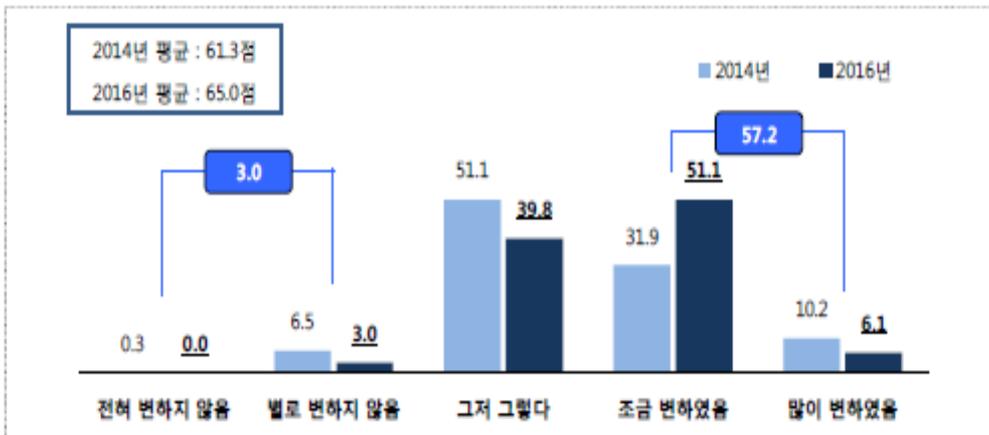
11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

11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5호

120) 중소벤처기업부·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84면

변하였음+많이 변하였음)은 제조업 중 ‘식료품/음료 제조’(61.8%), 비제조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83.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5.3%), ‘금융 및 보험업’(71.7%), ‘운수 및 창고업’(70.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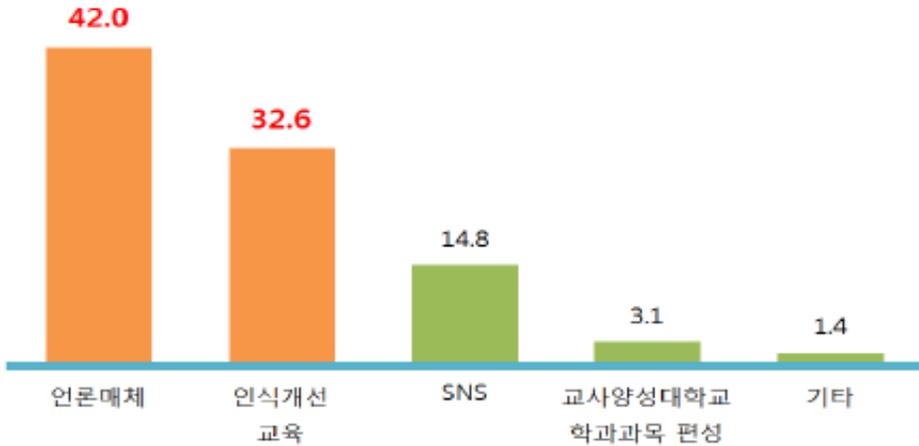
<그림4: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121)



변화하고 있다(‘조금 변하였음’ 및 ‘많이 변하였음’ 포함)는 것이 57.2%로 인식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여전히 42.8%(그저 그렇다 및 별로 변하지 않음)는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인식변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21) 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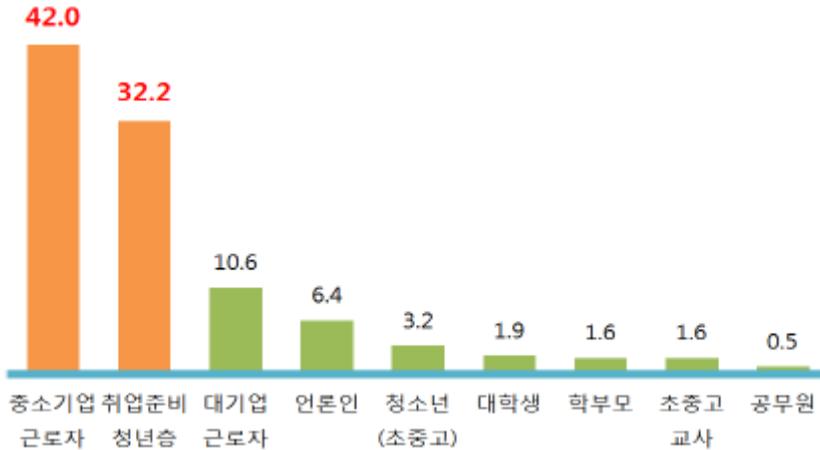
<그림5: 여성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 홍보수단>¹²²⁾ (단위:%)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키 위한 홍보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공중파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방법, 인식개선 교육 등이 그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¹²³⁾

122)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7 여성기업 백서, 333면, 2018.

123) Id.

<그림6: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대상>¹²⁴⁾ (단위:%)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집단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42%), 취업준비 청년층(32.2%), 대기업 근로자(10.6%), 언론인(5.4%), 청소년(3.2%), 대학생(1.9%), 학부모(1.6%), 초중고 교사(1.6%), 공무원(0.5%) 순이었다.¹²⁵⁾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키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그룹에 대한 집중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기업 성공사례집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여성기업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¹²⁶⁾

(2) 여성기업 인식제고 조항 신설 검토

인력지원에 관한 문제는 여성기업에 관한 인식개선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필요한 인력이 있어도 대기업과 달리 빠른 기간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 전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124) 중소벤처기업부·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7 여성기업 백서, 330면.

125) Id.

126) Id., p.330-332.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사입법례 검토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기업에 관한 인식 제고의 모델로 「중소기업법」을 참고하여 입법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남성기업인(또는 소유자)에 대한 인식과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여성기업에 있어 인력확보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개선이 중요한 것이라면 법규정에 정부의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명시하여 조금 더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 입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15조(인력확보의 지원)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인식 개선을 위한 의무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입법례1- 중소기업기본법	
제15조(인력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유사입법례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인식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홍보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래와 같은 여성기업인식제고를 위한 입법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신설)	제○○조(여성기업 인식제고) 정부는 여성기업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의 인식이 높지 못함으로 여성기업에서는 인력충원 및 잦은 이직 등 안정적 인력확보에 고충을 표시하고 있음 • 국내외 여성기업 등의 긍정적 역할에 소개 및 홍보 정책의 강화로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정부는 노력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법조의 신설로 법적 근거 강화
-------	--

이와 더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제2항 제4호에 “여성기업 인식제고”를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1-3 현행과 같음 4. 여성기업 인식제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현 행	개정안
<p>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중소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현행과 같음</p>

입법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의 인식이 높지 못함으로 여성기업에서는 인력충원 및 잦은 이직 등 안정적인 인력확보에 고충을 표시하고 있음 ● 국내외 여성기업 등의 긍정적 역할에 소개 및 홍보 정책의 강화로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정부는 노력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법조의 신설로 법적 근거 강화 ●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된다는 점에서 동 조에 추가를 통하여 여성기업인식의 변화 추이를 반영한 기본 계획 수립이 용이
----------	--

5.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 인센티브

여성기업인 및 종사자가 처하고 있는 주요 어려움인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방향성 모색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전문 여성경제인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은 여성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특히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¹²⁷⁾ 현재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동 사항의 반영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조세의 실질적 지원 방안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금전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동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조세평등주의 등 예상될 수 있는 반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지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¹²⁸⁾

세제 지원에 대해서 실제 필요한 개선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검토해보아야 하는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도 후속연구로 남겨 두고자 한다.

127)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7-89면, 2011.

128) 한편 재정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성기업 전용 공제조합에 설치에 관한 건, 여성기업 연구원설치, 그리고 여성기업 전용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그 실행지침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용이한 편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 문헌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대인,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3집 제1호, 2011
- 김보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사후적 입법평가 워크숍 자료집(2018. 7. 5).
- 김유환,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2집 제2호, 2017
- 김정인,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19권 제1호, 2013
-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법학, 제11호, 2011
-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준,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 vol. 24. 2018
- 김한중 외, 여성기업법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5
- 김현철, 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현대적 경향, 전남대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2015
- 명재진, 고용에 있어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2005
- 문미경 외,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민경원, 여성기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14

- 법무부, 각국의 차별금지법, 2008
-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백서, 2012.12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2016
- 소은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입법평가 토론문, 현대사회의 입법이론과 현안 자료집, 2018
- 신선미 외,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안진,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 전남대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2017
- 양민숙, 강민정,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유 훈, 정책변동론, 대영문화사, 2009
- 이숙진, 젠더(gender) 관련 차별금지
- 이영달,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8. 5. 16
- 이재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위헌심사, 87면 이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 입법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0
- 이정섭 외, 창업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중소기업연구원, 2016
- 이환성 외, 공공부문 적극적평등실현조치 해외사례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장민선, 입법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활용, 제17집 제2호, 2012

장민선,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에 관한 고찰-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3(1), 76면, 2011

정현수, OECD 출산율 꼴찌는 한국...유일한 '초저출산국가', 머티투데이, 2018. 8. 22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32면, 2018. 5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실태조사, 2018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7 여성기업백서, 2018

한정미 외, 여성기업 정의에 대한 법률적 고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연구용역, 2017

□ 국내판례

2017헌마11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2018헌마6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 외국문헌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2017

Fershtman, Chaim, Uri Gneezy, and Frank Verboven. "Discrimination and Nepotism: The Efficiency of the Anonymity Rul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34, no. 2, 2005

Jody Feder, Sex Discrimination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velopments in the Law,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Mohamad Alkadry & Leslie Tower, Unequal Pay: The Role of Gend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66, Issue 6, 2006

Naama Teschner, The Impact of Legislation on Gender Equality - Implement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The Knesset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2013

Olatunde C. A. Johnson, The Dignity of Equality Legislation, Harvard Journal of Law & Gender, vol36, 2013

Patricia A. Seith, Congressional Power to Effect Sex Equality, Harvard Journal of Law & Gender, vol36, 2013

Rosalie Berger Levinson, Gender-Based Affirmative Action and Reverse Gender Bias: Beyond Grats, Parents Involved, and Ricci, Harvard Journal of Law & Gender, vol 34, 2011

□ 외국판례

Cleveland Bd. of Ed. v. LaFleur (1974)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 (1986)

Johnson v. Transportation Agency (1987)

Franklin v.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1992)

J.E.B. v. Alabama ex rel T.B., (1994)

United States v. Virginia (1996)

Faragher v. City of Boca Raton (1998)

Oncale v. Sundowner Offshore Serv., Inc. (1998)

Davis v. Monroe County Board of Education (1999)

Schlesinger v. Ballard, 419 U.S. 498 (1975)

Rostker v. Goldberg, 53 U.S. 57 (1981)

입법평가 연구 18-15-③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18년 10월 29일 인쇄
2018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익현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899-7 9336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BN 978-89-6684-899-7

값 7,000원